

#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포항시장(2026. 1. 21.)

나. 회부일자 : 2026년 1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6. 2. 5.)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공원과장)

가. 제안이유

-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학산근린공원 궁도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한 체육(궁도)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사무명 :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 수탁자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의 내용
  - 궁도장 관리·운영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위탁 대상 시설물 등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
  - 기타 “위탁자” 와 “수탁자” 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탁 기간 : 3년
  - \* 위탁개시일은 위탁대상 사무의 여건에 따라 정하되, 제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 위탁 관리 대상 시설 세부현황

시설명	구분	규모(m <sup>2</sup> )	주요시설	소재지	비고	
학산근린공원 공도장	전체면적	6,616.30	과녁4개(사대~과녁 145m), 과녁조명, 조명탑, 풍향계, 신호등, 연접주차장 25대 등	북구 학산동 250-2번지 일원		
	건축물	건축면적	316.90			[1개동 지상1층] 공방, 사무실, 화장실, 대기홀 등
		바닥면적	305.30			
		연면적	305.30			

○ 추진경과

- 2020. 06. 23.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11. 11. : 공원조성사업 착공
- 2025. 03.~12. : 공원시설 관리운영 및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 2025. 09. 09. : 의회보고(학산공원 주요시설 관리운영 방안)
- 2025. 10. 16. : 「민간위탁관리위원회(6차)」 민간위탁 심의(적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가. 적정성 검토 근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나. 검토 내용

검토 기준	검토 결과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영의 경우 공익성이 높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업무자율성 약화 우려</li> <li>• 공공위탁은 공공성 및 안전성 등의 공익성이 높으나, 전문성 및 창의성과 업무자율성 등에서 단점이 발생</li> <li>• 민간위탁으로 운영 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고 체육(공도) 분야 전문지식 활용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li> </ul>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위·수탁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므로 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li> </ul>
③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시 타 공도장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대부분이 민간단체인 공도협회에서 관리운영 중이며, 관련 협회(단체) 운영 시 시설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로 별도의 인건비 책정이 필요치 않아, 이를 고려할 경우 민간위탁 방식이 경제적으로 가장 우수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인건비 제외 시 연간운영비는 41백만원 정도로 운영수입(약 34백만원) 상계처리 시 연간 7백만원 이하로 위탁운영 가능</li> </ul>

검토 기준	검토 결과
④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도시설 특성상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이 용이한 민간단체(궁도협회) 등에서 관리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도모</li> <li>• 체육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함</li> </ul>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반기별 보고를 통해 연도별 사업성과 비교측정이 가능함.</li> </ul>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업무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li> </ul>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시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민간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모범사례가 많아 시장 독점 가능성이 낮고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함</li> </ul>

다. 적정성 검토 결과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 민간위탁 시 궁도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이 용이한 지역 협회(단체) 등이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 활성화와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영 또는 공공위탁 대비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적정성 검토 기준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사업의 전문성·창의성 확보 및 중장기적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위탁 방식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가. 심의 근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2

나. 심의 개요

- 일 자 : 2025. 10. 16.(목)
- 심의내용 :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 여부

다. 심의 결과 : 적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가. 소요예산 : 평균 79,508천원/년 (\* 협회운영시 7,730,000원/년)

나.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세입	33,600	33,600	33,600
	○ 사용료	33,600	33,600	33,600	100,800
	소계(a)	33,600	33,600	33,600	100,800
세출	○ 인건비	44,202	45,530	46,896	136,628
	○ 경비	33,609	34,618	35,657	103,884
	○ 부가가치세 등	31,968	32,927	33,915	98,810
	소계(b)	109,780	113,075	116,468	339,323
□ 총비용(a-b)		△76,180	△79,475	△82,868	△238,523

다. 수입 세부내역 추계

(단위 : 원, 명)

회 원 수	회 비	1개월 수입	연간 수입
80명	35,000	2,800,000	33,600,000

주) 지출 천원단위 이하 절사

라.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운영관리 비용	비 고 (협회운영시)	
지출(A)	인건비	시설관리	44,202,204	-
		소 계	44,202,204	-
	경비	인적보험료	4,314,408	-
		복리후생비	2,541,818	2,541,818
		전력비	6,348,777	6,348,777
		상하수도비	2,124,720	2,124,720
		통신비	668,400	668,400
		사무관리비	7,084,915	7,084,915
		소모품비	3,616,917	3,616,917
		기타운영관리비	6,909,090	6,909,090
		소 계	33,609,045	29,294,637
		순 원가	77,811,249	29,294,637
	예비비(10%)	7,781,124	2,929,464	
	일반관리비(6%)	5,135,542	1,933,446	
	이윤(10%)	9,072,791	3,415,755	
	부가가치세	9,980,000	3,757,000	
총운영비	109,780,000	41,330,000		
수입(B)	운영수입	33,600,000	33,600,000	
운영수지(B-A)		-76,180,000	-7,730,000	

주) 천원단위 이하 절사

### 3. 향후 추진 계획

-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 2026. 3월 예정

### 4.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명권)

- 본 동의안은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학산근린공원 궁도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한 체육(궁도)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 3월 공원시설 관리운영 및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5년 10월 위탁관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가결되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준수함.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8천만원 정도의 위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나, 궁도협회에서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남.

계약서(안)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고(제14조), 관련 조례 및 공유재산·지방재정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5조) 공공시설 관리·운영 계약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는 마련된 것으로 보임.

○ 종합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학산근린공원 내 궁도장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절차·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바, 제도·절차 측면에서 특별한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위·수탁 계약서상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방지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그 책임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궁도장은 화살을 사용하는 체육시설로, 이용자 안전수칙 안내, 운영시간·이용인원 제한 등 운영상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며, 인근 공동주택 및 공원이용객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중요하므로, 위·수탁 계약서에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범위,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7. 토론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